##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6322 제안연월일: 2024. 12.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 사 경 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2200872)	2024.06.24.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 위원회(24.9.2.)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4.9.4.)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4.11.22.)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4.11.27.) 상정
	주철현의원 (2202374)	2024.07.3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 제1소위에 직접 회부(24.9.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4.9.4.)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4.11.22.)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4.11.27.) 상정
	용혜인의원 (2203583)	2024.09.0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 전위원회(24.11.20.)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4.11.22.)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4.11.27.) 상정
	권향엽의원 (2204406)	2024.09.2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 전위원회(24.11.20.)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4.11.22.)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4.11.27.)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7.)는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8.)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희생자 수에 비해 진상규명 신고건수가 적어 신고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위원회의 조사·분석기간이 2024년 10월 5일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처리건수가 상당히 남아 있어 진상규명 신고기간 및 조사·분석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국회에 인사추천 권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및 희생자를 위한 특별재심 청구 규정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기간을 연장하되, 적정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하되 필요시 추가로 1년 이내로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하도록하려는 것임.

또한,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

도록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희생자 중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 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기간을 연장하되, 적정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 다.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하되, 필요시추가로 1년 이내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 라.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되 필요시 6개월 이내 추가로 연장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 마.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에 따라 희생자 중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특 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 ※ 부대의견

- 1. 여순사건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보고서작성기획단 구성 시 정치적 중립, 객관성, 균형있는 역사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 2. 행정안전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 유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방안을 연구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 법률 제 호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를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법무부장관 · 국방부장관 · 법제처장 및 전라남도지사
- 2. 국회가 추천하는 4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 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 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 3. 유족 대표

4. 그 밖에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절차"를 "절차·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로, "작성하여야 하며"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특별재심) ① 희생자로서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3호」,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5호」,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3호」, 「보병제5여단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7호」와 그에 첨부된「별지」상에 기재된 사람 및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희생자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군법회의명령서에 기재된 사람은 제1항의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본다.
- ③ 「형사소송법」 제423조 및 「군사법원법」 제472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광주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회) ① ~ ③ (생 략)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

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위원회

의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

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개 정 안

제3조(여수·순천 10·19사건진 제3조(여수·순천 10·19사건진 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 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 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 할 때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 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법제처장 및 전라남도지사 2. 국회가 추천하는 4명(국회의

현 행	개 정 안
	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
	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u> 2명으로 한다)</u>
	<u>3. 유족 대표</u>
	<u>4. 그 밖에 여수·순천 10·19</u>
	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
	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
	여 위촉하는 사람
<u>⑤</u> ~ <u>⑨</u> (생 략)	<u>⑥</u> ~ <u>⑩</u> (현행 제5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
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①	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실무	<u>&lt;삭 제&gt;</u>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	
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친족 관계에	<u>②</u>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	
고 있는 사람의 범위 및 그 밖	
에 신고 방법· <u>절차</u> 등에 필요	<u>절차·기간</u>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b>–.</b>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
1	·

혂 행 개 정 아 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위원 집 및 분석) ① ---회의 의결로 진상규명조사 개 시 결정을 하고, 최초 진상규 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 다. <신 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 간 내에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 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 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 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 ② ~ ⑤ (생 략) 항까지와 같음) 제9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제9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기간이 -----제7조-----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여수 · 순천 10 · 19사건 진상조 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하여 국회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작업의 원 하며-----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순

천 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

현 행	개 정 안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u>&lt;신 설&gt;</u>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
	간 내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대통
	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
	<u>장할 수 있다.</u>
<u>②</u>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u>&lt;신 설&gt;</u>	제12조의2(특별재심) ① 희생자
	로서 여수・순천 10・19사건으
	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
	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
	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
	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
	의 명령 제3호」, 「호남계엄
	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5
	호, 「호남계엄지구 고등군
	<u>법회의 명령 제13호</u> , 「보병
	제5여단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

현 행	개 정 안
	17호」와 그에 첨부된 「별
	지」상에 기재된 사람 및 여수
	·순천 10·19사건 당시 희생
	자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군법
	회의명령서에 기재된 사람은
	제1항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
	고받은 사람으로 본다.
	③ 「형사소송법」 제423조 및
	「군사법원법」 제472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광주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
	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
	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